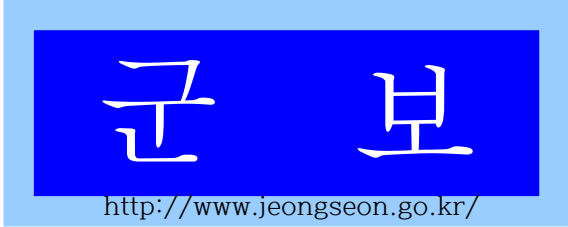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7호 2021. 6. 2.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71호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1-77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1-81호 수요응답택시 운행구역 추가 변경(확대)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1-83호 화암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603호 재해취약지 해소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8
- 정선군 공고 제2021-61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71호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위치 : 정선군 남면 문곡리 외 배후마을
2.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가) 명 칭 : 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나) 목 적 :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 : 역사공동체센터 건립, 역사다목적소통마당 설치, 남면 버스승강장
 - 나) 지역경관개선 : 팔봉산 역사공원 재정비, 어린이 역사마당 조성, 추억의 꽃밭 설치
 - 다)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시설활성화 및 공모사업 컨설팅 등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2,800 지방비1,200]
5. 사업 시행기간 : 2020 ~ 2023(4년)
6. 기대효과
 - 가) 행복한 삶과 웰빙에 기반한 건강거점 육성

- 나) 낙후된 가로경관 정비로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
- 다) 주민편의와 복지,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라) 존중과 이해,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면 지역공동체 형성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8.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

※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
(정선군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033-560-2464)

정선군 고시 제2021-77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3-41(2003. 5. 09)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소로2-1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92-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사업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4)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도로	소로 2-14호선	L=256m, B=8.0~10.0m	L=256m, B=8.0~10.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선(대표이사 노상균)

나.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봉양리	919-5	제	271	139		국(건설부)	-	-	-
2	정선읍 애산리	432-504	도	196	196		정선군	-	-	-
3	정선읍 애산리	432-505	대	858	22		정선군	-	-	-
4	정선읍 애산리	592-11	제	2,142	1,665		국(건설부)	-	-	-
5	정선읍 애산리	592-3	대	794	8		정선군	-	-	-
6	정선읍 애산리	592-4	대	1,416	12		정선군	-	-	-
7	정선읍 애산리	592-8	대	2,676	8		정선군	-	-	-
8	정선읍 애산리	592-9	장	3,450	122		정선군	-	-	-
9	정선읍 애산리	432-358	도	4,048	34		정선군	-	-	-
계				15,851	2,206					

정선군 고시 제2021-81호

수요응답택시 운행구역 추가 변경(확대) 고시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희망택시 운행구역 대상지역 변경(확대)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1. 희망택시 운행구역 변경(확대)

- ◎ 변경 전 : 여량면 남곡리 ⇨ 여량면 소재지
- ◎ 변경 후 : 여량면 남곡리 ⇨ 여량·임계면 소재지

※ 강원희망택시 변경 대상 지역

연번	대상지역	발급수	운행구역	비고
1	고한읍 (소두문동, 부금소, 양지, 막골)	28	고한·사북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2	화암 백전리(서원기)	3	화암·사북읍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3	남면 무릉2리(능전)	6	남면·사북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4	남면 광덕1리(수령)	11	남면·정선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5	남면 광덕2리(서마루)	4	남면·정선읍 소재지	일원화 택 시
6	여량면 남곡리	5	여량·임계면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7	북평 문곡리(스무골)	2	북평·정선읍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8	그 외 지역(읍·면)	333	해당 읍·면 소재지	거점· 일원화택시

2. 희망택시 운임제 변경 지역

연번	대상지역	변 경			비고
		대상지역	발급수	운임체계	
1	정선읍 (전 지역)	정선읍	101	구간제	
		(골안)	16	7,000원 (택시비 6,000원+1,000원*)	
		(오반동)	15	7,000원 (택시비 6,000원+1,000원)	
		(개끝)	7	5,000원. (택시비 4,000원+1,000원)	
		(그외 지역)	63	거리비례제	
2	고한읍 (전 지역)	고한읍	28	구간제	
		(양지마을)	5	6,600원 (택시비 5,600원+1,000원)	
		(막골)	7	6,600원 (택시비 5,600원+1,000원)	
		(그외 지역)	16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고시 제2021-83호

화암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촌 유휴시설 정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화암면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일

정 선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화암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 2. 사업의 목적
 - 화암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건천리 일원
 - 사업내용
 - 건천리 유휴시설 리모델링(지역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 주요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한 방문객 체험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4. 사 업 비 : 450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225)
- 5.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2년)
-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화암면)
 -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암면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화암면 산업개발 ☎033-560-2639)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603호

재해취약지 해소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취약지역에 고성능 재난감시CCTV 설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 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4일

정 선 군 수

- 1. 사 업 명 : 정선군 재해취약지 해소 재난감시CCTV 설치
-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취약지역을 감시하는 재난감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4. 공고기간 : 2021. 03. 14. ~ 06. 02.(20일간)
-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portal>)

6.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장 소	용 도	촬영 시간	녹화 기간	운영 기관	비고
1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378-4	임계월탄	하천감시	24시간	30일	건설과	
2	임계면 봉산리 산 150-7	구미정상류(가랭이교하류)	하천감시				
3	여량면 유천리 674-6	여량유천리홍터교	하천감시				
4	북평면 나전리 348-3	졸두교	하천감시				
5	북평면 문곡리 380-2	문곡교	하천감시				
6	정선읍 광하리 93-2	광하매표소 인근	하천감시				
7	고한읍 고한리 산 1-11	고한갈래초(합류점)	하천감시				
8	고한읍 고한리 산 2-215	고한읍사무소 아래	하천감시				
9	고한읍 고한리 274-287	고한한미음식비식당앞	하천감시				
10	고한읍 고한리 산 216-16	고한못골(고한 상류)	하천감시				
11	사북읍 사북리 452-87	사북중민한교회옆	하천감시				
12	사북읍 사북리 357-36	사북오거리공영주차장건너	하천감시				
13	사북읍 사북리 산 161-15	사북6리주공아파트교량	하천감시				
14	남면 낙동리 315-1	남창교	하천감시				
15	남면 광덕리 711-3	남면광탄교	하천감시				
16	화암면 화암리 509-1	화암동굴 앞(종류교)	하천감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 건설과(재해예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03. 14. ~ 06. 0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 우편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 팩스 : 033)560-2591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정선군 건설과 재해예방팀 (☎033-560-249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선군 공고 제2021-61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류 정비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 권익보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 민원 서류의 미 보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 근거 없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음에, 관련 조문 삭제.
- 군계획위원회 안건 배부 기간 명시(안 제60조)
 - 군계획위원회 운영 시 사전에 안건이 배부되지 않거나 충분한 기한 전에 배부되지 않는 경우 사전 검토 미비로 회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사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배부 근거 규정 마련.
- 별표 개정(안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12)
 - 준주거 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 지역에 대하여 숙박시설(일반, 생활형) 및 위락시설의 입지 시 주거지역과 이격 거리 산정 명확화
- 별표 개정(안 별표 26)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예외 규정의 10호 이상 자연마을 적용기준 명확화.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5. 20~ 2021. 6. 10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를 “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 을 “법 제28조제5항” 으로 한다.

제6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밖에 있는 대지” 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며, 제2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중 “밖에 있는 대지” 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며, 제2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 중 “밖에 있는 대지” 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며, 제2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 중 “밖에 있는 대지” 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하며, 제2호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 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으로 한다.

별표 26 본문 중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를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p>	<p>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한다.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u>법 제28조제4항</u>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② (생 략)</p>	<p>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 <u>법 제28조제5항</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60조(회의운영) ① ~ ⑥ (생 략) <신 설></p>	<p>제60조(회의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p>

[별표 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을 제외한다)

[별표 9] <개정 2016.10.20. , 2016.12.3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10] <개정 2016.6.9., 2016.10.20., 2016.12.3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6.6.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11] <개정 2016.12.3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2]<개정 2016.10.20.,2016.12.3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16.10.20.>

[별표 26] <개정 2016.12.30., 2019.06.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31조제2항 관련)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부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및 개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21. 7.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 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1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1.5.24. ~ 2021.6.13.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 전화(033-560-2258), 팩스(033-560-2599)
 - 주 소 : (23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 1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구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p> <p>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구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2026년</u> <u>12월 31일</u>----- . ----- ----- ----- -----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